

포항가속기연구소 규정

제정 1991. 4.15	개정 1999. 5. 4	개정 2008. 3.16	개정 2016.10.17
개정 1995. 8.14	개정 2000. 7.10	개정 2010. 1.19	
개정 1996. 8.16	개정 2001. 9. 1	개정 2013. 5.10	
개정 1996.11.21	개정 2003. 2.20	개정 2013.10.23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가속기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 및 기능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둔다. (개정: 2013.5.10)

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 (개정: 2013.5.10)(개정: 2016.10.17.)
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며, 필요시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: 2013.5.10)

④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통할한다. 다만, 소장 부재시 업무대행은 부소장이 수행한다.

⑤ 연구소에는 소장, 부소장 산하에 가속기연구단, 방사광연구단, 기획실, 행정지원부, 방사선안전팀을 두며 각 부서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: 2013.10.23)(개정: 2016.10.17.)

⑥ 소장은 필요시 방사광가속기의 운영자문을 위해 고문, 보좌역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되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⑦ 각 부서의 하부조직 및 정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.

⑧ 연구소의 조직은 별표1과 같다.

제3조(업무처리기준) 소장은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은 필요시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1. 예산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2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4. 중요한 인사 및 지침 설정에 관한 사항
5. 채무부담 발생 원인행위에 관한 사항
6. 기타 대학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

제4조(연구원) ① 연구소원은 겸직교원, 연구원, 기술원, 행정원, 위촉원으로 구분된다.

② 연구원, 기술원 및 행정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소장은 방사광가속기 유지·보수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

내에서 위촉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④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포항가속기연구소 인사관리지침에 따른다.

제5조(예산 및 회계) ① 연구소의 예산은 정부출연금(연구개발사업비 포함), 포항종합제철(주) 출연금, 수탁연구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편성된다.

② 예산은 독립회계체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출연금, 포항종합제철(주) 출연금 및 기타의 계정으로 구분 계리한다.

제6조(협조사항) ① 연구소가 국제기술협력(공동연구 포함)등 외국기관과 제반협약이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소장은 상호 협의하에 포항공과대학교, 포항종합제철(주) 및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의 인원, 시설,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7조(방사광가속기의 운영) 연구소는 방사광가속기의 운영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방사광 이용자에 대한 기술적, 행정적 지원
2. 방사광가속기의 가동 및 운전
3. 방사광가속기 장치의 성능향상, 국산화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연구
4. 건설중 축적된 기술의 활용
5. 설비시설의 유지 보수
6. 방사광 이용자의 육성 및 홍보
7. 국제협력
8. 신규시설 구축 및 주요설비 확충
9. 산업융합기술 지원 및 육성

제8조(방사광가속기 운영위원회) 연구소는 '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' 제3조의 심의사항 등 방사광가속기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방사광가속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9조(연구소내 위원회 운영)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소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연구소내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연구소내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위원장, 간사선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자문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국내외 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공과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세칙 등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지침 등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2.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채용된 연구소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5월 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7월 1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2월 2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(조직 및 기능) 제2항은 200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월 1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(별표 1) 조직도

포항가속기연구소 조직

